

2022학회의 연구윤리가이드라인 표준화방안

학회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

발 표 자 이 호 빈

2020.04.22.

CONTENTS

01

이슈

-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
- 학술단체의 검증
- 이해충돌

02

이해관계자

- 편집인
- 저자
- 심사자

03

출판윤리

- 동료심사
- 논문철회
- 우려표명
- 저작권

04

연구윤리

- 윤리 규정
-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제재 조치

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

- (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) 검증의 주체가 연구 수행 당시 소속기관에만 있었으나, 학술단체에서도 검증 할 수 있음

제16조(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)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. 이 경우, 현재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도 자료제출, 조사출석 등 검증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술단체에서도 검증할 수 있다.

“학술단체의 검증”

-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1차적 책임은 연구자의 연구수행당시 소속 기관
- 연구부정행위를 학회가 인지 했을 경우 →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알림
-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판정 → 판정을 근거로 논문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함

“학술단체의 검증”

- 학술단체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
 - ✓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
 - ✓ 연구기관이 정치적, 사회적 이유로 판정을 내려서 학회에 통보하는 경우
 - 예를 들어 윤xx 강사의 논문에 대한 사회적 문제
 - ✓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없는 (폐교 등의 이유로) 등의 이유로 검증책임주체가 부재한 경우
 - ✓ 연구기관의 판정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경우

“ 이해충돌 관련 규정 ”

- **(이해충돌방지법)** 2022.5월 시행 예정에 있음/ 대학에서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
 - 학회에서도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 및 서약서 등 마련 필요
- 재정적 이해충돌 : 논문과 관련되어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해 밝힘
 - 인적 이해충돌 : 편집자/심사자/저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
 - 편집자가 자신이 편집자로 있는 논문에 출판하는 경우, 심사자와 저자 간에 사적 이해충돌 발생 / 특수관계인(미성년 공저)가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
 - 직무상 이해충돌 : 논문과 관련되어 저자의 소속기관이 다양한 경우
 - 저자가 다양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밝힘
 - 지적 이해충돌 : 연구자의 이념, 신념, 지적 성향이 달라 편향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

02

“ 편집인의 지침 ”

- (편집인의 정의) 논문 투고부터 출판 그리고 출판 후 사후 관리의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을 의미
- (편집인의 책임) 편집인은 출판 전 과정과 게재된 출판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짐
- (편집권 독립) 편집인은 학술지의 내용과 출판의 모든 절차에서 외부인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출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

- 편집인이 자신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
 - 편집인이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, 심사자를 스스로 지정하고 논문을 심사 받아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발생 하였음
 - 명백한 '사적 이해충돌'에 해당함
 - 편집인이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할 경우
: 심사자 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,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처리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함

02

“ 저자의 지침 ”

- **(중요성)** 저자됨(Authorship)은 저작물에 대한 공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미함
 - **(정의)** 저자란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하고, 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함
 - **(저자의 순서)**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, 모든 저자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함
- **(교신저자)**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, 동료심사, 출판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짐
 - **(저자의 소속 표기)** 저자의 연구실적 표기, 연구부정행위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학술지는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을 표시할 것을 권장함
→소속기관은 ①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, ② 연구자(학생인 경우)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, ③ **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**
 - (특수관계인)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인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, 논문 등에 관련 사실을 밝힘
 - **(저자 분쟁)** 저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, 먼저 저자 간 자율적 합의를 권장,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해결하도록 함

“ 심사자의 지침 ”

- **(정의)** 동료심사 시 투고된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발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
- **(심사자의 자격)** 심사자는 심사대상 원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,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편집장에게 밝히고 심사를 중단해야 함

Royal Society of Chemistry Journals - 심사자의 자격

심사자로 등록하려면 CV 또는 이력서와 심사자 신청서(reviewer application form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심사자가 될 수 있다.

- (1) 관련 분야에서 박사 수준(또는 동등한 자격)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
- (2) 현재 활동 중인 연구자
- (3) 우리의 저널과 비교할 만한 저널에 동료 심사를 거친 하나 이상의 논문이 있는 경우

02

“ 심사자의 지침 ”

- (심사자의 책임)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를 수락하기 전, 해당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 범위, 심사 기밀유지 방법, 심사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를 따라야 함
-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
 - 심사자는 **심사 대상 원고에 대해 반드시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, 심사평, 원고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됨**
 -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됨
 - 심사자는 저자의 성별, 사상, 직업, 종교, 직위, 정치적 신념, 논문의 출처, 연구비 수혜여부, 상업적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함
 - **심사자는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함**
 - 심사평은 건설적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됨

03

“ 동료심사 ”

- **(동료심사 제도)** 학회는 적절한 전문가에 의해 심사가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갖추어야 함
- **(심사자의 배정)** 편집인은 원고 주제에 맞는 적절한 전문가를 배정해야 하고,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심사자는 제외해야 함
- **(심사자 제척)** 학술지는 투고자가 이해상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심사자를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
- **(편집인 심사)** Desk Review 편집인은 투고된 원고의 학문적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거절할 수 있음
- **(심사의 판단)** 편집인은 원고 당 2인 이상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심사하게 하고 심사자 간 판정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임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음

03

“ 논문철회 ”

- (논문철회 원칙) 한번 출판된 논문을 수정,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
- (논문철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) 정직한 실수, 연구부정행위, 중복출판, 비윤리적인 연구 보고 등이 있을 때 논문철회를 고려해야 함
 - 정직한 실수 : 논문의 중요 데이터나 자료가 정직한 오류로 인하여 잘못되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
 - 연구부정행위 : 위조, 변조 표절과 같이 독자가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
 - 중복출판 : 허락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 데이터 또는 논문을 게재한 경우
 - 잘못된 심사 : 잘못되었거나 조작된 동료심사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

“ 우려표명 ”

- **(우려표명 정의)** 논문에 명백한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논문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편집인은 논문철회 대신 우려표명 기사를 발표할 수 있음
 -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
 -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 -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
 -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

03

“ 저작권 ”

- (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)
- (양도) 학술지가 저작권을 양도 받게 되면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유롭게 논문을 사용, 수익, 처분할 수 있음
- (이용허락) 저작자(저자)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면서 학술지는 논문을 사용, 수익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
- (저작권양도의 문제) 저자가 저작권 양도계약에 동의하면 저자의 논문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으로 학술지에 양도하게 됨. 이로 인해 저자는 자신의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사용을 제한 받을 수 있음

“ 연구윤리 ”

- **(예방)**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학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함
- 표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고된 원고, 게재될 원고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표절검사 실시해야함
- 투고자로부터 “**연구윤리준수서약서**” 제출을 의무화함
-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**연구윤리 교육**을 실시해야 함

- **(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학회는 여러 가지 연구윤리 이슈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고 학회 내의 연구진실성을 강화 및 필요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

04

“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”

- (제재조치) 학회는 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연구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한국정보과학회

- ① (주의)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,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.
- ② (경고)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,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,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.
- ③ (문책)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.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.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- ④ (엄중문책)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.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.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.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
THANK
YOU

발 표 자 이 호 빈